

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

자료제공 : 환경부

1. 수질·상하수도 분야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부서 (☎2110)
1. 낙동강·금강·영산강특별법제정				
① 수변구역 지정제도 도입	<신 설>	○ 상수원담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하천에 일정 구간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·고시 - 낙동강: 양안 500m - 금 강: · 지천 300m (주민 동의시) · 본류 500m (특별대책지역밖) 1,000m (특별대책지역내) - 영산강: · 500m (지원은 주민 동의시)	낙동강·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4조 및 제5조 (2002하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②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	<신 설>	○ 하천구역중 국·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(과용, 오용, 남용 제한)	낙동강·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6조 (2002하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③ 하천인접지역에 도시·산업단지·관광지 등 신규개발시 초지·녹지·인공습지 등 비점(非點)오염저감시설 설치	<신 설>	○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의 인접지역에서 도시, 산업단지 등의 신규개발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	낙동강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(2002하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
④ 상수원 주변토지매수	<신 설>	○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	낙동강·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8조 (2002하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⑤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 시설 설치	<신 설>	○ 낙동강유역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이 직접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	낙동강특별법 제18조 (2002하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⑥ 상수원관리 지역등 주민에 대한 자원사업 시행	<신 설>	○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, 댐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·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	낙동강특별법 제23조, 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21조 (2002하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⑦ 수질오염방지 시설 운영 지원	<신 설>	○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	낙동강특별법 제25조, 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23조 (2002하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⑧ 물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	<신 설>	○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·금강·영산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·징수	낙동강특별법 제32조 내지 제35조, 금강·영산강특별법 제30조 내지 제33조 (2002하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
⑨ 수계관리위원회 설치	<신 설>	○ 물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의 중요정책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	낙동강 특별법 제37조, 금강·영산강 특별법 제35조 (2002상반기)	수질 정책과 (6830~2)
2.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				
① 정수처리기술기준 도입	<신 설>	○ 병원성미생물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정수처리기술기준 제도 도입	먹는물수질 기준및검사 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(2002하반기, 관계부처협의중)	수도 관리과 (6880)
② 수질기준초과시 조치사항 규정	<신 설>	○ 수질기준초과시 검사 주기단축·초과원인분석·시설개선 등 조치사항 규정	먹는물수질 기준및검사 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 (2002하반기, 관계부처협의중)	수도 관리과 (6880)
③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	<신 설>	○ 대장균군 수질기준강화(불검출/50ml→불검출/100ml) ○ “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”을 수질기준항목으로 추가하여 분원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○ 수도꼭지의 대장균군 기준에 확률개념 도입	먹는물수질 기준및검사 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(2002하반기, 관계부처협의중)	수도 관리과 (6880)
3. 오수·분뇨 및축산폐수처리체계의 강화				
① 오수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 강화	○ 특정지역·기타지역방류수 수질기준 (mg/ℓ) - BOD 80~40이하 - SS 80~40이하 · 1일처리용량이 100㎡ 미만 80이하, 100㎡ 이상 200㎡ 미만	○ 특정지역·기타지역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- BOD 20mg/ℓ 이하 - SS 20mg/ℓ 이하	오수·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 부칙 제2조 및 제4조 (2002.1.1)	생활 오수과 (6860~1)

	60이하, 200㎡이상은 40이하 적용			
② 건물신축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지역 확대	○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내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	○ 지역 및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	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부칙 제1조 (2002.1.1)	생활 오수과 (6860~1)
③ 분뇨 등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능 강화	<신 설>	○ 분뇨 등의 재활용시설이 설치·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	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 (2002하반기)	생활 오수과 (6860~1)
④ 축산폐수 처리기준 강화	○ 축산업자에 계단 관리기준을 적용	○ 축산업자외에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분뇨 등 처리업자에게 축산폐수처리기준을 준수토록 함	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 (2002하반기)	생활 오수과 (6860~1)
⑤ 분뇨등처리업, 정화조청소업,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허가전 타당성 검토	<신 설>	○ 분뇨등 처리업 등의 허가신청 전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투자 방지	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제3항 (2002하반기)	생활 오수과 (6860~1)
⑥ 설계·시공업통합 관리	○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·시공업에 분뇨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·단독정화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으로 구분	○ 각각의 업종으로 구분된 설계·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·시공업으로 통합	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(2002하반기)	생활 오수과 (6860~1)
4. 산업폐수 관리체도의 개선				
① 노말핵산추출물질 시험방법 개정	○ 노말핵산추출물질을 총노말핵산추출물질로 측정	○ 노말핵산추출물질 시험방법에 광유류 함량 측정방법을 추가하여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를 분리·측정	수질환경보전법제7조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4장 제9항 (2002.1.1)	산업 폐수과 (6840~2)
② 용존 총질소, 용존 총인 시험방법 제정	<신 설>	○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용존 총질소 및 용존 총인의 시험 방법 추가	수질환경보전법제7조, 수질오염공정시	산업 폐수과 (6840~2)

			협방법 제4장 제15항 및 제18항 추가 (2002.1.1)	
③ 병원배출시설 적용범위 조정	○ 의료법에 의한 종합 병원을 배출시설로 규정	○ 병상수 기준으로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규모 이상이면 폐수배출 시설에 포함	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(2002.1.1)	산업 폐수와 (6840~2)
④ 통합 출입·검사 제도 도입	<신 설>	○ 폐수, 대기, 소음·진동, 오수·분뇨 및 축산, 폐기물, 유해화학물질 관련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출입·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	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제4항 (2002.1.1)	산업 폐수와 (6840~2)
5.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	○ 방류수 수질기준 (mg/ℓ) <특정지역기준> - BOD 20 이하 - COD 40 이하 - COD 40 이하 - SS 20 이하 - T-N 60 이하 - T-P 8 이하	○ 방류수 수질기준 (mg/ℓ) <특정지역 기준> - BOD 10이하 - COD 40이하 - SS 10이하 - T-N 20이하 - T-P 2이하 * 강화되는 특정지역 기준 적용대상: 한강수계 지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특별대책지역중 팔당호상수원 수질특별대책지역과 잠실수중보관역	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(2002.1.1)	하수도과 (6895~6)

주) 낙동강특별법: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
금강특별법: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
영산강특별법: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

II. 자연환경분야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부서 (☎2110)
1. 습지보호지역 관리강화				
① 습지개천지역 관리강화	○ 습지개천지역에서 생태계 위해 외래종·식물을 풀어놓는 행위만 규제	○ 습지개천지역에 대해 출입제한과 매립면허·골재채취허가 금지가능 ○ 공익·군사상 불가피하게 습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일정비용 이상 습지 존치 의무 부여	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 등 (2002하반기)	자연 정책과 (6735~7)

②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	<신 설>	○ 습지보호지역·습지 주변관리지역·습지개천지역 및 습지보전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	습지보전법 제18조의2 (2002하반기)	자연 정책과 (6735~7)
③ 습지보호지역내의 관리등 매수	<신 설>	○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토지·건축물 및 광업권·어업권 등을 매수할 수 있음	습지보전법 제20조의2 (2002하반기)	자연 정책과 (6735~7)
2.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				
①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강화	○ 토양오염 피해의 배상 주체를 당해 오염원인자로 규정	○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보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 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책임의무를 부과	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(2002.1.1)	토양 보전과 (6765~6)
② 토양환경평가 제도 신설	<신 설>	○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·양수하는 경우에 양도·양수인이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의 토양오염을 조사(토양환경평가)할 수 있도록 함	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(2002.1.1)	토양 보전과 (6765~6)
③ 토양정밀조사 명령제도 신설	<신 설>	○ 시·도지사는 토양오염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 가능	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(2002.1.1)	토양 보전과 (6765~6)
④ 토양오염실태조사체계 마련	○ 매년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토양 측정망체제로 되어 있어 오염우려지역을 조사하는데 한계	○ 시·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찰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	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(2002.1.1)	토양 보전과 (6765~6)
⑤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 강화	<신 설>	○ 토양환경평가제도 등 각종 토양오염조사제도를 신설했에 따라 조사기관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공정성·신뢰성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입금지, 지정취소 등 처벌규정 마련	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 (2002.1.1)	토양 보전과 (6765~6)
⑥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체계 이원화	○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·장치·건물·건축물 및 장소	○ 토양오염유발시설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·장치·건물·건축물 및 장소	토양환경보전법 제22조제4호 (2002.1.1)	토양 보전과 (6765~6)

	리가 있는 시설로 유류·유독물질 저장 시설 등임	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, -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현행 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관리		
⑦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	○ 중금속 6종, 유류, 시안화합물 등 11개 항목	○ TCE, PCE, 불소, 아연 등 5개물질 추가 - 토양오염유리기준(가지역) · TCE 8(mg/kg) · PCE 4(mg/kg) · 불소 400(mg/kg) · 아연 300(mg/kg) · 니켈 40(mg/kg) - 토양오염대책기준(가지역) · TCE 20(mg/kg) · PCE 410(mg/kg) · 불소 800(mg/kg) · 아연 700(mg/kg) · 니켈 100(mg/kg)	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2, 제1조의4 및 제21조 (2002.1.1)	토양보전과 (6765~6)

	0.2g/kwh이하 ○ 다목적형 경유자동차 - NOx 0.75 g/km - PM 0.09 g/km ○ 중형 경유자동차 - NOx 0.95 g/km - PM 0.11 g/km ○ 중형 경유 자동차 - NOx 1.06 g/km - PM 0.14 g/km	시내버스는 0.1g/kwh ○ 다목적형 경유자동차 - NOx 0.75 g/km - PM 0.09 g/km ○ 중형 경유자동차 - NOx 0.78 g/km - PM 0.10 g/km		
④ 제작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변경	○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: 한국식측정방법 및 ISO362 측정방법 병행 ○ 대형차(승용 4, 화물3)기준 - 79~80dB	○ 국제표준화기구(ISO)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으로만 시험 ○ 대형차(승용4, 화물3) 기준강화 - 77~80dB	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11 (2002.1.1)	교통공해과 (6805~6)

III. 대기환경분야

제목	종전	달리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부서 (☎2110)
1. 자동차공해 관리 강화				
① 자동차 공회전 금지제도 도입	<신 설>	○ 시·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·차고지·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음	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(2002하반기)	교통공해과 (6805~6)
② 불법연료등에 대한 규제 강화	○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위반차 처벌 -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	○ 불법연료 제조·공급·판매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- 제조·공급·판매자 : 7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 - 사용자 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	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2항 (2002하반기)	대기정책과 (6780~2)
③ 제작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	○ 대형경유자동차 - NOx 7.0g/kwh이하 - PM	○ 대형경유자동차 - NOx 6.0 g/kwh이하 - PM 0.15g/kwh이하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7조 별표20 (2002.1.1)	교통공해과 (6805~6)

⑤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	○ 휘발유 - 올레핀 23% 이하 - 황함량 200ppm 이하 - 증기압 82kpa 이하 ○ 경유 - 증기압 82kpa 이하 - 황함량 0.05% 이하	○ 휘발유 - 올레핀 18% 이하 - 황함량 130ppm 이하 - 증기압 70kpa 이하 ○ 경유 - 밀도 815~855kg/m ³ - 황함량 0.043% 이하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별표30 (2002.1.1)	대기정책과 (6780~2)
⑥ 규제지역안에서의 운행 자동차에 대한 필요요치 요청 관자 조정	○ 규제지역 지정 요청권자인 시·도지사	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으로 이양	소음·진동규제법 제30조 (2002하반기)	생활공해과 (6815~6)
2. 사업장 오염물질 관리 강화				
① 황 함 량 0.3% 중유 공 급지역 확대	○ 0.3% 중유 공급지역 - 서울 등 주요 도시 7개지역	○ 0.3% 중유 공급지역 - 서울 등 대도시 20개 지역	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시행령 제 34조, 청정연료등의사용예관고시 별표2 (2002.7.1)	대기정책과 (6780~2)
②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시	○ 배출시설 가동개시신	○ 폐지	소음·진동규제법 제13	생활공해과

시설부합여부 확인제도폐지	고시 시설부 합여부 확인 규정		조제3항 (2002하반기)	(6815~6)
③ 소음·진동 상시 측정 의 무 부여	○ 소음·진동 측정업무가 시·도지사 의 입의 측정 의무 - 시·도 : 21개 도시 136지역 - 환경부 : 14개 도시 121지역	○ 상시 측정업무로 의무 화	소음·진동 규제법 제3조 제2항 (2002하반기)	생활 공해과 (6815~6)
④ 배출시설설 치신고 또는 허가시 수수료 결정	○ 환경부령의 배출시설 설 치신고나 허 가 수수료 규정	○ 시·도 조례로 이양	소음·진동 규제법 제55조 (2002하반기)	생활 공해과 (6815~6)

③ 쓰레기 봉 투에 담기 어 려운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 출 절차 간소 화	○ 대형폐기물 의 종류: 20개 품목 ○ 대형폐기물 배출시 동사무 소방문·스 티커를 수령하 여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	○ 대형폐기물의 종류 : 54개 품목으로 확대 ○ 봉투판매소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거나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에 연락하여 직접 배출보류 배출방 법 추가	쓰레기수수 료 종량제 시 행 지침 (2002상반기)	폐기물정 척과 (6915~7)
④ 1회용 비닐 봉투의 별도 배출 및 수거	<신 설>	○ 1회용 비닐봉투를 별 도 분리 수거하여 재활 용하거나 비축	쓰레기수수 료 종량제 시 행 지침 (2002상반기)	폐기물정 척과 (6915~7)
⑤ 농어촌지역 에 대한 쓰레 기 배출 및 수 거 개선	○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 제 봉투 사용	○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	쓰레기수수 료 종량제 시 행 지침 (2002상반기)	폐기물정 척과 (6915~7)

V. 기타 분야

IV. 폐기물분야

제목	중점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부서 (☎2110)
1. 쓰레기종량 제 제도개선				
① 쓰레기봉투 재질 강화 및 형태 개선	○ 쓰레기봉투 두께(20ℓ) : 0.025mm ○ 묶는 끈 길 이 : 5cm	○ 쓰레기봉투 두께 (20ℓ 기준) : 0.030mm ○ 묶는 끈 길이 : 5~21cm	쓰레기수수 료 종량제 시 행 지침 (2002상반기)	폐기물정 척과 (6915~7)
② 쓰레기 봉 투 환불 절차 개선	○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남은 봉투를 사용하지 못 하고 환불도 해주시 않아 버려야 하는 문제 발생	○ 봉투가격이 동일한 자 치단체내 모든 판매소에 서 교환이 가능토록 개 선 ○ 봉투가격이 다른 자치 단체는 판매소에서 교환 해 주고 자치단체간 상 호 정산하는 체계 도입	쓰레기수수 료 종량제 시 행 지침 (2002상반기)	폐기물정 척과 (6915~7)

제목	중점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부서 (☎2110)
1. 친환경건축 물 인증제도시 행	<신 설>	○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 유도·촉 진 - 그린빌딩 인증기관 을 지정하고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, 공동주택 을 대상으로 「그린빌딩」 인증제도 도입	친환경건축 물 인증제도 세부운영지 침 (2002.1.1)	환경 경제과 (6677~8)
2. 배출업소 관 리체계개편	○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 리권은 지방 환경관리청장 이 수행하고, 그 밖의 업소 는 자치단체 에서 관리	○ 산업단지내외 구분없이 자치단체에서 모든 배출업소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지도·점검업 무 수행 ○ 중앙정부에서는 4대 강 환경감시대를 정규화 하여 상습위반업체, 상 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 기동 점검업무 수행	대기·수질 환경보전법 시행령등 4대강특별법 (2002하반기)	행정관리 담당관실 (6620~2)

